

## 금융위원회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 1 현황

■ 착오송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2021. 1. 5. 법률 제17878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음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증가<sup>107)</sup>하였으며,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소송<sup>108)</sup>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음
-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한 후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22.5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9,836건(145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964건(37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sup>109)</sup>

- '22.5월말 기준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7.2억원을 회수<sup>110)</sup>하여 소요비용<sup>111)</sup>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8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착오송금반

107) 예금보험공사, 2021 연차보고서, p.89. 착오송금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018년 13만 4천건(2,965억원), 2019년 15만 8천건(3,203억원) 2020년 20만건(4,64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108) 송금액 1백만원 기준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송비용 60만원 이상 소요

109)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예보, '22.5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2022.6.20.

110)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급명령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함

111)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지원신청 중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은 '22.5월말 기준 51.6%에 해당함

- 제도 도입 이후 월 평균 반환지원 신청자는 900명 수준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제도 도입시 연간 적용대상으로 추산한 5만3천명<sup>112)</sup>에 비하면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신청인의 절반 이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sup>113)</sup>
-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sup>114)</sup>은 96.0%이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며, 자진반환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41일, 지급명령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임
- 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액심판(3천만원 이하) 기준 소 제기부터 승소시까지 최소 6개월(사실조회 2개월+본안소송 4개월 이상)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으나,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수준(자진반환의 경우 2주~1개월 이내, 지급명령 단계에서 회수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비해서는 미진한 상황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 |**

( '22.5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금액
반환지원 현황	신청 총계	9,836	14,482
	① 지원 대상*	4,459	6,149
	② 심사중	624	828
	③ 지원 비대상	4,753	7,505
반환현황	반환 총계	2,964	3,719
	자진반환	2,858	3,518
	지급명령	106	201

\* 수취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수취인 정보 조회 및 검토 후,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건  
 자료: 예금보험공사

**2 향후 논의 사항**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수를 확대하고,

112)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 8.2만건 중 5만원~1천만 원 대상(압류, 사기거래 등은 제외)

113) 지원 비대상 사유는 ①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4%), ② 송금인의 신청 철회(20.7%), ③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④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4,753건) 중 64.5%를 차지함

114)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신청자 대비 지원 비대상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2022년 1월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6%가 착오송금 지원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sup>115)</sup>

■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신청부터 반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반환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판단 및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등의 확보, 수취인에 대한 반환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하여 반환지원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설치된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비대면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착오송금액 5만원~1천만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착오송금액 5백만원~1천만원 구간의 지원신청 건수는 전체 신청 대비 8.7%(872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43.7%(6,330억원)인데, 소액사건의 기준인 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16)</sup>
- 또한 간편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취인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간편결제송금업자를 추가하여 연락처 송금 등 간편송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 02-2100-2911

115) 인크루트 보도자료, 성인 남녀 응답자 66.0%\_ "실수로 다른 곳에 착오송금한 경험 있다", 22.01.06.;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지원제도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116)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1 현황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출판물·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117) ① 일대일 방식의 차별화된 투자자문이 허용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동질적인 자문만 제공 가능하다는 점, ②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필요로 하는 등록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투자자문업과 차이가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5월말 기준 신고업자 수는 2,008개에 달하며<sup>118)</sup>, 특히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등),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고 투자자는 이용료 외에도 투자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진입요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는 있으나 진입·영업·퇴출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sup>119)</sup>
  - 부적격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18)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https://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https://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2022.06.22. 방문

119)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건의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247호), 홍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104호)]이 발의되어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규정이 부재하여 표시광고법 등 일반 소비자 법규가 적용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을 통한 재진입이 가능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에 한계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식 리딩방 입장 후 1:1 투자자문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점검·단속에 한계가 있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문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 변경시에도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sup>120)</sup>
  -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수익률 허위 표시를 금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적격 업체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도 대표자와 같이 재진입을 제한하도록 퇴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 02-2100-2661·2663

120) 현재는 대표자 변경시에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 1 현황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금융감독보다 성과가 가시적인 금융산업 정책에 경도되기 쉬운 구조로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감독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sup>121)</sup>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sup>122)</sup>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함께 감독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현행 중층적 감독체계는 양 기관의 역할에 혼선을 빚게 하여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감독기능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

#### |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혁 |

구 분		~1998.4.	1998.4.~2008.2.	2008.2.~
국제금융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국내 금융	금융정책	재정경제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감독정책			
	감독집행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비 고		재정경제원이 국내금융 감독기능을 제외한 경제금융정책 전반 관장	통합감독기구 출범 (위원장/원장 겸임)	위원장/원장 분리

자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크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통합,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기구 운영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

121) IMF에서도 2013년 한국의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감독당국의 목표가 금융산업육성에 치우쳐 있다(tilted to the promo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고 지적한바 있음; 박선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1.4, 2021.12. pp.259-284.

122)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3건의 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84호),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937호),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477호)]이 발의되어 있음

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sup>123)</sup>고 주장함.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금융행정의 비효율, 책임성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체계에서는 중복규제의 가능성 및 기관 간 판단 차이 또는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한 감독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함. 반면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독점함에 따라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정책·집행 기능의 통합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sup>124)</sup>도 제시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등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 추구가 용이할 수 있으며, 시장 친화적 금융감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권을 민간기관에 부여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 등 공법상 법리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감독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토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어떻게 감독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25·2874

123) 김경신·이수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13.

124) 양준모,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윤창현 국회의원 세미나 자료집, 2020.7.7.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1 현황

■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함

-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비용<sup>125)</sup>(원가)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차등 구조로 시행하고 있음<sup>126)</sup>
-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sup>127)</sup>에서 정하며, 금융당국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sup>128)</sup>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할 경우 신규 카드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며,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이용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sup>129)</sup>

-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125) ① 자금조달비용, ② 위험관리비용, ③ 일반관리비용, ④ 승인·정산비용, ⑤ 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하여 적격비용을 산출함

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2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128) 카드 고객과 가맹점과 같이 상호 이질적인 집단이 플랫폼(카드결제서비스)을 통해 상호작용해 상대방의 시장 참여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장

129) 윤종문, 「국내외 카드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 여신금융지 제53호, 2018.06.

카드론이 확대되고 신용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 할인·적립 등 혜택을 축소하거나 연회비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sup>130)</sup>

-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통보한 후 개별 가맹점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동네마트 등 일반가맹점은 사실상 협상 권한이 없어 카드사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협상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적격 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카드사는 이미 우대수수료율 관련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총 적격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가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sup>131)</sup>

|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추이 |

연매출액	2012.9.		2015.1.		2016.1.		2017.7.		2019.1.		2022.1~	
	신용	체크	신용	체크								
2억원 이하	1.5%	1.0%	1.5%	1.0%	0.8%	0.5%	0.8%	0.5%	0.8%	0.5%	0.5%	0.25%
2~3억원	일반	일반	2.0%	1.5%	1.3%	1.0%						
3~5억원			일반	일반	일반	일반	1.3%	1.0%	1.3%	1.0%	1.1%	0.85%
5~10억원							1.4%	1.1%	1.25%	1.0%		
10~30억원							1.6%	1.3%	1.5%	1.25%		
평균수수료(일반)	2.14%		2.10%		2.09%		2.08%		2.0%내외		-	

자료: 금융위원회

2 향후 논의 사항

-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

130)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021.12.23.

131) 구정환·이규복, 「지속가능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기반마련 연구」,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05.

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비하여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현행 우대수수료율 체계 내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카드수수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 설립의 기준을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일반가맹점의 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sup>132)</sup>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 02-2100-2992

13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 1 현황

■ 가계신용통계<sup>133)</su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2년 1분기 기준 1,859.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소폭 축소되어 코로나19 대응,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증가세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세가 축소된 원인으로는 2022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 차주 단위 DSR 규제 2단계<sup>134)</sup>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sup>135)</sup>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최근 3년간 가계대출 현황 |

(단위: 조원)

	2019	2020	2021	2022(1분기)
가계신용	1600.6	1727.9	1860.1	1859.4
가계대출	1504.9	1632.0	1754.2	1752.7
주택담보대출*	842.9	910.6	981.7	989.8
기타대출	662.0	721.4	772.5	762.9
판매신용	95.7	95.9	105.8	106.7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7.6%	105.7%	108.3%	-

\* 주택담보대출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됨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를 기준으로 하며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sup>136)</sup> 비율은 2021년말 기준 10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거나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133)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신용' 또는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가계신용은 가계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및 부업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자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뜻함

134) 기존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됨

135)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0년 12월 2.79%, 2021년 12월 3.66%, 2022년 5월 4.14%로 상승하였음

136)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통계(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채를 의미함

-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sup>137)</sup>(threshold)에 대하여 BIS의 Cecchetti et al.(2011)과 Lombard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80% 내외로 제시하고 있음<sup>138)</sup>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붕괴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여 ①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 ② 주택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가능성, ③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새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내세우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상한을 완화(80%)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sup>139)</sup>
  -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분기 기준 56.5%로 부동산 등 자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신용대출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은 가계부채 부실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출금리 25bp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는 약 3.3조원(22년 1/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추산됨<sup>140)</sup>

## 2 향후 논의 사항

- 대출규제의 완화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 LTV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SR 규제는 유지하는 방안 등 거시건전성과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LTV, DSR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음

137) 경제에 대한 가계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커지는 수준을 의미함

138) Stephen G Cecchetti, M S Mohanty and Fabrizio Zampolli,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s No 352, 2011.9.; Lombardi, M., M. Mohanty, and I. Shim, "The Real Effects of Household Debt in the Short and Long Run," BIS Working Paper, No. 607, 2017.

13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2022.06.16.

140)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19, 2022.06.

- 대출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부채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DSR 규제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고,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의 경우 분할 상환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만기를 확대하는 등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6

#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 1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가상자산(BTC, ETH 등)의 세계시장 시가총액은 2,66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시가총액은 총 55.2조 원으로 파악됨<sup>141)</sup>

### | 국내외 가상자산 상위 10개 종목 비교 |

(단위 : 조 원)

구분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주1)			국내 상위 10개 종목주2)		
	종목명	시가총액	비중	종목명	시가총액	비중
1	BTC	1,042.7	39.2%	BTC	7.5	13.6%
2	ETH	521.5	19.6%	ETH	6.8	12.4%
3	BNB	101.6	3.8%	XRP	5.6	10.2%
4	USDT	93.3	3.5%	E**	1.5	2.7%
5	SOL	62.7	2.4%	W**	1.5	2.7%
6	ADA	52.2	2.0%	ADA	1.3	2.4%
7	USDC	50.2	1.9%	N**	1.2	2.2%
8	XRP	47.0	1.8%	H**	1.0	1.9%
9	LUNA	36.8	1.4%	SOL	1.0	1.8%
10	DOT	31.4	1.2%	B**	0.9	1.6%

주1) '21. 12. 31.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2,660조 원 추정)

주2) '21. 12. 31.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기준 (시가총액 55.2조 원)

자료 : 금융위원회(2022)

■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거래량 8,249만 달러 → 2021년 거래량 176억 9,485만 달러(2020년 대비 21,350% 증가)),<sup>142)</sup> 국내 시장에서도 UPbit NFT, korbit NFT, WEMIX Auction 등의 NFT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음

■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sup>143)</sup> 금융위원회는

14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 2. 28.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2021년 11월 고점 대비 하락함)

142) Nonfungible, 「Yearly NFT Market Report 2021」, p. 34.

143)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제정 법률안으로는, 「가상자산사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935)」, 「디지털자산산

디지털 자산 유형별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 향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게임 개발사 Wemade의 자회사가 발행한 WEMIX의 가격이 2022년초 폭락하면서 Wemade의 WEMIX 대량 매도 사실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음<sup>144)</sup>
- 그리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up>145)</sup>인 Terra USD는 2022년 5월 가격이 99% 이상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의 설계상 오류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sup>146)</sup>
- NFT의 경우에도 시세조종 및 사기 사건,<sup>147)</sup> 거래소 해킹 사건<sup>148)</sup>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기 전에도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자산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분산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권성 판단)하고, 기존 금융규제 또는 공적 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범위와 성격이 관찰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행 가능한 정책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sup>149)</sup>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67)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간 규제 조치를 조정하도록 하면서, “동일사업, 동일위험, 동일규칙”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및 감독 기준을 디지털 자산 발행인과 거래소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sup>150)</sup>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1771)»,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3016)»,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037)», 등이 있음

144) CoinDesk Korea 기사, 「위믹스 코인 매각, 영문 백서 한쪽에 모호하게 적은 게 적절한 공시?», 2022. 1. 15.

145)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자산임(한국은행,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2021.)

146) 연합뉴스 기사, 「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CEO 고소…합수단 1호 사건될 듯(종합)」, 2022. 5. 19.

147) SBS NEWS 기사, 「NFT 투자 받아 ‘시세 조종’…사기 행각 벌인 일당 체포」, 2022. 4. 27.

148) 조선비즈 기사, 「세계 최대 NFT 거래소 해킹...도난 등으로 2400억원 피해」, 2022. 2. 21.

149) FSB, 「Assessment of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from Crypto-assets」, 2022. 2. 16.

Commission, SEC)와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등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securities)에 해당할 때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임을 밝힌 바 있음<sup>151)</sup>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의 유형(가상자산은 증권형, 비증권형 등, NFT는 수집형, 예술형, 게임형, 메타버스형, 유틸리티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할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함. 디지털 자산의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분산된 네트워크(이른바,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sup>152)</sup> 증권성 판단 시 고려할 탈중앙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예방, 모니터링 지원 등을 수행하는 협회<sup>153)</sup> 또는 거래소 등이 표준화된 자율규제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주장하며 발행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무너질 경우, 대규모 상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sup>154)</sup>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주는 2022년 6월 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지침(Guidance on the Issuance of U.S. Dollar-Backed Stablecoins)”을 발표하였는데, 동 지침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명확하고 뚜렷한 상환정책을 채택할 것, 준비금을 발행자의 자산과 분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sup>155)</sup>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 02-2100-2534

150) Presidential Documents,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Executive Order 14067, 2022. (Sec. 2. (b), Sec. 3.)

151)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2017-131, 2017.; FCA, 「Guidance on Cryptoassets」, 2019. 7. 31.

152)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중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음(FinHub of the SEC,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2019. p. 4.)

153) 송화윤,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021. pp. 201~202.

154) FSOC, 「Annual Report」, 2021. p. 17.

155) DFS, 「Guidance on the Issuance of U.S. Dollar-Backed Stablecoins」, 2022. 6. 8.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 1 현황

- 조각투자는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음<sup>156)</sup>
-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sup>157)</sup>가 발행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임<sup>158)</sup>
  -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6항<sup>159)</sup>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임
  -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sup>160)</sup>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뮤직카우가 수행하는 업무(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의 결과에 따라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 변동 손익을 향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음<sup>161)</sup>
  -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 시세조종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적용받게 됨(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는 보류됨)

156) 금융위원회,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1.

157)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p. 2.)

15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pp. 1~3.

1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60)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합의회 행정기관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6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p. 8.

- 이후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sup>162)</sup>
  -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예시(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조각투자 상품 가격이 상승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와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예시(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등)를 나열함<sup>163)</sup>
-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요건(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 귀속 등)의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sup>164)</sup>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 관련 사업자 또는 투자자는 증권성 인정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투자자의 수익, 투자대상의 가치·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즉, 사업자)의 노력, 능력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미국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권성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함<sup>165)</sup>
-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업에 대한 권리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sup>166)</sup> 현행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사업 또는 투자한 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조각투자의 증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사업자 또는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대한 해석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16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1.

163)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2.

16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4.

165) 투자자들이 감귤 농장 토지를 Howe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Howey가 농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금을 투자자들과 공유했던 사례(SEC v. Howey Co., 328 U.S. 293 (1946); 김갑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2. p. 3.}

166)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5.

-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내 디지털 자산, 핀테크 전문 부서인 “혁신·금융 기술을 위한 전략적 허브(The Strategic Hub for Innovation and Financial Technology, FinHub)”는 2019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이하,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음<sup>167)</sup>
  - 프레임워크는 SEC의 규칙이나 규정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프레임워크는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요건(reliance on the efforts of others)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획자 또는 후원자, 기타 제3자가 ▲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개발에 주도적이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관리자로서 결정(디지털 자산 판매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 추가 디지털 자산을 받을 대상과 조건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의 공급 제한 또는 희소성 보장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지원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증권성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 상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 보류기간 또는 유예기간 등을 결정할 때 사업자 또는 투자자의 신뢰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02-2100-2650

167) FinHub of the SEC,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2019.

##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 1 현황

- 최근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한 사례 |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 상장일	상장 당일 모회사 주가	모회사 현재 주가	주가 등락률	코스피 지수 등락률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2021.3.18.	30만 1,000원	12만 2,000원	-59.5%	-13.9%
SK이노베이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	2021.5.11.	26만 9,000원	21만 4,000원	-20.5%	-17.7%
카카오	카카오페이	2021.8.6.	14만 5,500원	8만 8,300원	-39.4%	-19.3%
	카카오뱅크	2021.11.3.	12만 4,500원		-29.1%	-11.3%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2022.1.27.	61만 원	46만 3,000원	-24.1%	0.9%

주 : 모회사 현재 주가는 2022.4.27. 종가 기준이며, 코스피 지수 등락률은 자회사 상장일 종가와 2022. 4. 27. 종가(2639.06)를 비교함

자료 : 한국거래소

- 또한 기존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별도 회사인 신설회사로 분리되면,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기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설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권 박탈’ 또는 ‘핵심 사업부문의 독립 상품화로 인한 소액주주의 수익권, 처분권 몰취’ 등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sup>168)</sup>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음<sup>169)</sup>
  -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sup>170)</sup>에

168) 김은수, 「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경영법학』 제31권 제2호, 2021. p. 199.; 이상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의 문제점과 주주 보호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 2022. p. 25.

1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2. 3. 7.

17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매월 5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상장기업은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②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며,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④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sup>171)</sup>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 및 미준수 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는 것이며, 의무대상 기업을 자산 총액 기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음(2019년 2조원 이상 → 2022년 1조원 이상 → 2024년 5천억원 이상 → 20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sup>172)</sup>

## 2 향후 논의 사항

■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의 동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단계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상장규정의 개정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2020년 2월 동경거래소가 상장규정을 개정한 바 있는데,<sup>173)</sup> 상장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모회사)는 ① 그룹경영에 관한 관점 및 방침을 근거로 한 상장자회사 보유 의의, ② 상장자회사 지배구조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sup>174)</sup>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7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2. 3. 7.

17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2022. 3. 7.

173) 조대현·이승희, 「일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범 제·개정 동향과 시사점」,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21. p. 11.

174) 有価証券上場規程施行規則 第212条, 4, (1)

- 한편, 싱가포르 거래소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마찬가지로 상장을 신청할 경우, 자산 및 영업범위의 중복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규정을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거래소는 모자기업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중단해야만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 수준을 2022년부터 강화함<sup>175)</sup>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 02-2100-2680

175) 남길남,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의 주요 이슈」, 『Issue Report』, 자본시장연구원, 2022. p. 19.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선

### 1 현황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sup>176)</sup>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책임있고 공정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AI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점(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편향성, 결과 도출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발생함(2015년 채용 AI의 남성 선호 이슈로 도입을 취소한 아마존 사례, 2015년 포토 서비스가 흑인을 고릴라로 태깅한 구글 사례, 2016년 욕설과 극단적 발언을 학습한 챗봇 테이 사례 등)<sup>177)</sup>
  - 이에 전 세계적으로 2018년 45개, 2019년 28개, 2020년 23개의 AI 윤리기준이 마련되었음.<sup>178)</sup>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윤리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 국내 AI 윤리 정책 및 가이드라인 주요 사례 |

부처	정책·가이드라인	발표 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윤리기준	'20. 12.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21. 5.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1. 5. 31.
방송통신위원회	AI 기반 미디어(매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21. 6. 3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21. 7. 8.

자료: 각 부처 보도자료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79)</sup>

176) 데이터를 해석하여 지식을 추론하거나 정보를 처리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능력이 구현된,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말하며, 컴퓨터 처리능력 향상, 우수 알고리즘 등장, 네트워크 발전에 따른 데이터 축적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이수환, 박소영,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

177) 유재홍, 추형석, 강송희, 「유럽(EU)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원칙에서 실천으로」, 『ISSUE REPOR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p. 1.

178) Stanford University HAI,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 2021. 3.

-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 AI 시스템의 개발, 사업화,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하여 AI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의 목적,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AI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쳐야 함. 설명의무가 있는 금융서비스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AI 시스템의 평가·검증 단계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성과와 공정성의 목표 수준과 판단 지표”를 선정하여야 함. 서비스에 따라 우선시되어야 하는 성과와 공정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sup>180)</sup> 위험요인을 통제하여야 함
  - 도입·운영·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고지하고 성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그런데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의 추상적인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스스로 평가(self-assessment)해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평가 목록(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평가 목록”)을 발표함<sup>181)</sup>

179)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주요 검토 필요사항」, 2021. 7.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2021. 7. 8.

180)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격자의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False Negative 오류)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불법거래를 탐지하는 서비스는 불법거래를 탐지하지 못하는 위험(False Positive 오류)을 최소화하여야 함

- 평가 목록은 추상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사전(Glossary)을 첨부하였는데, “AI 신뢰성(AI reliability)”에 대하여 “AI 시스템이 이전에 훈련되거나 테스트 되지 않은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도 예상대로 작동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책임성(Accountability)”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목적과 동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공정성(Fairness)”에 대하여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개인과 그룹 사이의 평등한 대우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관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평가 목록은 AI 윤리 요구사항(① 인간 행위자와 감독, ② 기술적 견고성과 안정성, ③ 프라이버시·데이터 거버넌스, ④ 투명성, ⑤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⑥ 사회·환경적 웰빙, ⑦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예컨대, 책임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제3자가 AI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등)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 “인공지능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는데,<sup>182)</sup>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정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기술함. 특히 점검항목은 의무사항(예를 들어,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권장사항(예를 들어,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으로 구별되어 있음<sup>183)</sup>

■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를 도입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영업규제와 연계하는 등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평가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하여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 02-2100-2620

181) AI HLEG(High-Level Expert Group on AI), 「The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elf assessment」, 2020.  
18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자율점검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시 -」, 2021. 6. 1.  
18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021. 5. 31.

##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 1 현황

-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 대상 영업유형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③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하여 금융 관계법령은 중개<sup>184)</sup>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중개행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2021년 9월 ‘사례 검토결과’를 발표함
  -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함<sup>185)</sup>
  -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에 대하여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라고 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때 혜택(현금 지급)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개로 봄<sup>186)</sup>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sup>187)</sup> 중개의 범위가 모호하여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플랫폼 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음
  - 광고와 중개는 궁극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모두 판매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영업행위 유형의 ‘판단 예시’로, “특정인 맞춤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광고

1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개로 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2021. 3. 17. p. 2.)

18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021. 9. 7. p. 3.

18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021. 9. 7. p. 7.

1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략)

를 제공”하는 것을 중개로 보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 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sup>188)</sup> 그러나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다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sup>189)</sup>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상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되고 있음<sup>190)</sup>

-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하여 근거가 마련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본인 신용정보관리업)<sup>191)</sup>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임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력, 물적설비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전문성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sup>192)</sup> 이에 더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위한 요건(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을 구비해야 한다면,<sup>193)</sup> 기존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사업의 중단 및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중개행위를 단순 정보제공, 광고 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sup>194)</sup>

- 디지털 금융환경에서는 단순 정보제공에서부터 계약체결의 중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sup>195)</sup> 중개행위 판단에 필요한 기본원

18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2021. 3. 17. p. 2.

18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021. 6. 8.

190) 이성엽, 「‘규제에 발 묶인’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경오피니언, 2022.

1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1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19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94) 남궁주현, 류혁선,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2.

195) 남궁주현, 류혁선,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2.

칙(예를 들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면 중개, 서비스·수익 구조에서 ‘객관성’이 확보되면 단순 정보제공 등)을 제시한 다음 세부적으로 중개행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상품추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이 사실상 중개행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또는 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sup>196)</sup> 중개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에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적인 시도가 저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행위의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미 엄격한 진입규제를 받은 이상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서비스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sup>197)</sup>도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42

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2.

196) 남궁주현, 류혁선,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NARS 정책연구용 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1.

197) 이성엽, 「‘규제에 발 묶인’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경오피니언, 2022.

##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 1 현황

- 망분리(network separation)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함<sup>198)</sup>
  - 망분리의 기술적 구현방식으로는 크게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가 있음.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각 망에 접속하는 컴퓨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망간 접근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을 말하며,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 또는 컴퓨터를 가상화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식을 의미함<sup>199)</sup>
- 금융부문의 망분리 규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15조<sup>200)</sup>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의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실시하여야 함
-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용 망과 인터넷용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sup>201)</sup>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물리적 망분리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비효율적이고 오픈소스 등 신기술의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 개발자가 소스코드 하나 하나 반입·반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됨<sup>202)</sup>

198) 조병주, 윤장호, 이경호, 「금융회사 망분리 정책의 효과성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5. p. 182.

199)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17. 12. pp. 81~85.

200)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 그러나 망분리를 통한 데이터 차단 보안 방식을 우회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도 있음(정다빈·나현대·김선우, 「디지털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개혁 정책 연구 -데이터 중심의 핵심가치 보호와 개발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4차 산업혁명정책센터 KPC4IR REPORT NO. 11. 2020. 12. p. 30.)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일률적·획일적인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sup>203)</sup>
- 다만,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보완조치(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것 등)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래정보의 범위, 통제된 상황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할 경우의 예외 인정 여부 등이 불분명함.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 개선을 2023년부터 단계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보다 신속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음<sup>204)</sup>

## 2 향후 논의 사항

- 규제 개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 규제체계 마련, 개발 현장 실무에 맞는 예외 기준 수립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망분리 규제를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균형있게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sup>205)</sup>
  - 참고로 미국의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Examination Council, FFIEC)가 기업의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등을 제시한 정보보안 대책자(Information Security)에서도 위험 수준과 자산의 치명도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고 각 보안 구역 사이와 내부에 적절한 접근 요건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206)</sup>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0

202) STARTUP ALLIANCE,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ISSUE MINI SUMMARY vol 1. 2020. 2. p. 7.

2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2022. 4. 15.

204) 윤창현 의원실 세미나 자료,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22. 5. 3.

205) 김승주,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앞으로의 망분리 정책은?」, ISSUE MINI SUMMARY vol 1. STARTUP ALLIANCE, 2020. 2. p. 59.

206) FFIEC,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Technology Examination Handbook, 2016. p. 19. (“Establishing zones according to the risk profile and criticality of assets contained within the zones and appropriate access requirements within and between each security zone.”); STARTUP ALLIANCE,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ISSUE MINI SUMMARY vol 1. 2020. 2. pp. 39~45.

##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 1 현황

■ 2020년 8월 정부는 고령층의 금융이용 실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음

- 정부는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를 △ 오프라인 지점 축소, 온라인화 등으로 인한 금융접근성 저하, △ 온라인 위주의 금융비용 혜택, 고령층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에 따른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 고령층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장, △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각종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점증, △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 미흡으로 진단함<sup>207)</sup>

■ 당시 정부는 이와 같은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에 대응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함

####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주요 내용 |

과제	내용	세부 추진사항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 강화, 점포폐쇄 3개월 전 고객 통지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제공	이동·무인 점포,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대체창구 공급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이용 환경 개선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마련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온라인거래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 보완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 강화	연령차별 금지,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 제시 의무화, 신규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분석 실시 지도
	고령층 정보제공 강화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노력 강화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격한 제재

207)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020. 8.

과제	내용	세부 추진사항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공급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치매환자 등 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활성화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 개발·공급	주택연금(또는 치매보험)에 가입·이용 중인 고령고객이 치매보험(또는 주택연금)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치매보험료 할인
	기타 고령친화 금융상품 출시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 보험가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 등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착 취 대응 강화	‘금융착취’ 대응을 위한 금융권 역할 강화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 신고근거 마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요구,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방지앱 설치, 고령층에 대한 사기의심거래 시 거래절차 강화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인증제 도입
	전달체계 다양화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 (가칭)‘실버 금융소식지’ 발간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시니어 전문강사 자격과정 신설, 중·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 금융교육 거버넌스 구축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교육 체계화

주: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020. 8.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 2 향후 논의 사항

- 2020년 정부는 고령층 등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sup>208)</sup>, 그 이행 정도는 2022년 현재까지 미흡한 수준임
  - 은행 점포폐쇄 대안인 우체국 활용은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업무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어 올해 말부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sup>209)</sup>
  -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의 경우 은행들은 2022년 2월에 마련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반영해 2023년 상반기까지 앱을 개발·출시할 예정임<sup>210)</sup>
  -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 및 금융사기 방지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등의 경우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으며<sup>211)</sup>, 고령층을 대

20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 -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0. 8. 31.

209) 박준호·최서진, 「‘우체국서 은행 업무’…인수위, 금융허브 서비스 도입한다」, 뉴시스, 2022. 4. 20.

210) 금융위원회,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2022. 2. 25.

211) 윤성훈, 「주택연금 가입하면 치매보험료 깎아준다더니… ‘함흥차사」, SBS Biz, 2022. 1. 14.; 서정원, 「노인 전용앱 가이드 만드는 데만 2년…당국도 ‘뒷짐」, 매일경제, 2022. 4. 3.

으로 한 금융사기·착취 대응을 위한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도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금융정책에 의지가 부족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sup>212)</sup>가 있는바, 정부는 고령층의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5

212) 서정원, 「노인 전용앱 가이드 만드는 데만 2년…당국도 ‘뒷짐」, 매일경제, 2022. 4. 3.

##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 1 현황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인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주로 규정하고 있음<sup>213)</sup>
-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규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sup>214)</sup>
  -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상 부과금액(위반 횟수별 가중처분의 경우 1차 위반 기준)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여야 함
  - 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설정한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여 과태료 부과금에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a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 b행위에 대해 5백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으나,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a행위에 대해 50만 원, b행위에 대해 3백만 원으로 규정된 경우는 위반행위 간 순서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임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위원회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입법자의 판단과 다르게 운영 중인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하여 행정법규 위반 정도의 경중을 정한 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금 수준을 정하고 있음

21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p.593, p.600

21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pp.601~602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

시행령의 위반행위 분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상한액)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가.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5,000만원)	250만원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5,000만원)	12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5,000만원)	2,500만원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바. 법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000만원)	600만원
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4호 (5,000만원)	2,500만원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5호 (5,000만원)	500만원
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0호 (5,000만원)	1,500만원
서. 법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72조제2항 (3,000만원)	1,800만원
어. 법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 (2,000만원)	1,000만원
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3 (5,000만원)	2,500만원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허.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2호 (5,000만원)	1,500만원

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부 재구성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가목·나목·카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250만 원, 120만 원, 500만 원으로 정하여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정한 바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600만 원보다도 적어 과태료 부과금에서의 위반행위 간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5천만 원인 러목·허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인 서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인 1,800만 원보다 적어 역시 과태료 부과금에서의 위반행위 간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외에도 「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수의 금융위원회 소관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입안심사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전반적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02-2100-2818·2808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 1 현황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임
  - 2019년 6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금융업법」, 「보험업법」에 그 근거가 마련된 이래 최근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도 법제화됨
  -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8조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sup>215)</sup>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용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증가폭 대비 수용건수 증가폭은 작아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음
  -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 8,000여건에서 2020년 91만 1,000여건으로 증가하여 약 4.6배 증가하였으나,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하락함

#### | 금리인하 신청·수용 건수 및 수용률 |

(단위: 만건, %)

	17년			18년			19년			20년		
	신청 (A)	수용 (B)	수용률 (B/A)	A	B	B/A	A	B	B/A	A	B	B/A
은행	16.2	9.6	59.3	28.5	11.5	40.4	55.0	20.7	37.7	71.4	22.5	31.6
보험사	0.8	0.5	59.1	1.2	0.6	53.0	3.3	1.9	57.3	4.3	2.1	48.8
저축은행	1.6	1.3	79.3	3.9	3.0	76.6	3.2	2.4	73.6	4.4	2.8	62.6
여전사	1.2	0.9	73.2	2.3	1.8	73.2	5.4	3.5	65.1	10.9	6.4	58.3
합계	19.8	12.2	61.8	36.0	16.9	47.0	66.9	28.5	42.6	91.1	33.8	37.1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3

- 정부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이 수용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고<sup>216)</sup> 2021년 10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215) 2020년 중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을 인화된 금리로 1년간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 추정치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4)

216) 2020년 은행 가계대출 관련 수용률을 비교하면 대면 신청 시 76%, 비대면 신청 시 27%로 나타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3)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관리」 전 과정에 걸쳐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함

##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비대면’과 관련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신청비중이 2020년 기준 83%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영업점 등을 통한 대면 신청은 감소 추세에 있음<sup>217)</sup>
- 그런데 정부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세부방안은 ‘대면’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고, ‘비대면’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보임
  - 예를 들어 대출계약 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 문구에 덧쓰기 추가를 제시하는 등 대면 방식에서 주로 유효한 안내 강화방안을 제안함

■ 또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활용 수준을 ‘수용률’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수용률 이양호한 은행을 거래 은행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용률은 금융회사의 책임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정부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증대한 것이 수용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함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수용률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금융회사가 오히려 신청 안내 등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sup>218)</sup>을 감안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 : 02-2100-2956·2957

2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3

218) 고수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낮으면 나쁜 금융사?」, 뉴스워커, 2022. 4. 25.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 1 현황

-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이하 “방지대책협의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방지대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됨
  - 방지대책협의회는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의 수립·추진,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단속·교육·홍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sup>219)</sup>
  - 방지대책협의회의 위원은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실무협의회의 의장(금융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됨<sup>220)</sup>
  - 방지대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렵거나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sup>221)</sup>

###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방지대책협의회의 실제 참여기관과 법령상 구성원이 동일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임

219)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3조

220)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4조

221)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6조·제8조

- 방지대책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다가 2018년 12월부터는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음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에는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방지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상 구성원인 해양경찰청은 방지대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sup>222)</sup>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서 방지대책협의회에 실제 참여하는 기관 위주로 협의회 구성을 변경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함이 지적되었으나<sup>223)</sup>, 해당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sup>224)</sup>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심각성<sup>225)</sup>을 고려하고, 계속 진화하는 신종 사기 수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지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그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방지대책협의회는 서면회의만 개최되었<sup>226)</sup>, 최근까지 몇 차례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sup>227)</sup>
- 또한, 신·변종 수법 출현 시 방지대책협의회의 경보 발령이나 대책 수립이 지연되고, 대책

222)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8. 12. 18.에서는 방지대책협의회의 참석자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이라고 설명함

223) 감사원,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Ⅱ」, 2021., p.293

224)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7.10.25>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제7조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의장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25)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만 1조 7,626억원(금융회사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2022. 4.)

226) 감사원,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Ⅱ」, 2021., p.294

227) 최성근, 「“검찰청 수사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도 정부 협의체 ‘유명무실」, 시사저널 이코노미, 2021. 9. 10.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sup>228)</sup>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6·2978

228) 감사원,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II」, 2021., pp.294~296

##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 1 현황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함
  -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계좌라고 설명됨
  - 대선 당시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229)</sup>
    -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이 적립되게 됨
    - 정부는 소득에 따라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원함  
(이 경우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년간 5,75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됨)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를 선택할 수 있음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됨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지원은 불가능함
- 2022년 5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청년도약계좌<sup>230)</sup>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가칭)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sup>231)</sup>
  - 첫째,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함

229)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2. 2., p.156 ; 염지현, 「尹 ‘청년 1억 통장’ 워길래…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갈아타나」, 중앙일보, 2022. 3. 13.

230) 인수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의 공약 당시 명칭이고 다수 언론보도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사용함

2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분과브리핑]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 2022. 5. 2.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view.php?id=brief&code=115](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view.php?id=brief&code=115))

- 둘째,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은 상품별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함
- 셋째,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함
- 넷째,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함
- 다섯째,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여 선순환 환경을 조성함

##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향후 결정하겠다고 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요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대신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지원금 수준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어 연봉이 적은 소위 ‘금수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sup>232)</sup>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청년층은 결혼, 내 집 마련 등 자금 소요 요인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동안 한 상품을 유지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sup>233)</sup>
- 또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청년도약계좌에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 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sup>234)</sup>, 아직까지 소요 비용 수준과 어떻게 예산을 마련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 02-2100-1688

232) 이승우·유채연, 「“청년도약계좌, 자산은 안보고 월급따져 탈락...이게 공정한가요”」, 동아일보, 2022. 5. 19.

233) 김윤주, 「[윤석열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 ‘청년 1억 통장’ 출시...실효성 논란은 불식해야」, 이코노미스트, 2022. 5. 10.

234) 김대훈, 「尹 “10년 모으면 1억”...청년도약계좌 가능할까」, 한국경제, 2022. 5. 3.

##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 1 현황

-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신규 계좌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7월부터는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함
  - 최초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미성년자로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으나<sup>235)</sup>,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확대됨
- 은행은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제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운영하고 있음<sup>236)</sup>
  - 서류제출이 어려운 자의 경우 은행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최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목적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개인정보가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 시 증빙자료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금융회사별로 요구자료에 차이가 있음<sup>237)</sup>

### 2 향후 논의 사항

-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침·지도(협조요청)에 따라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미이행 시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는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임<sup>238)</sup>

235)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정례 브리핑 자료, 2012. 10. 30.

236)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p.3

237)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p.8

-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종 서류제출, 금융거래 한도계좌 운영에 따른 이체 제한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sup>239)</sup>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계좌 개설 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은행에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했지만, 은행측에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만 바꾸면 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고 요구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됨<sup>240)</sup>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해지의 기준이 은행별로, 같은 은행이라도 영업점별로 차이가 있는 한편, 적용 시 금융회사 직원의 재량이 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영업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sup>241)</sup>
  -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절차 진행 편리성 차이도 있으므로 위험성을 최소화한 비대면 방식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sup>242)</sup>

<b>작성자</b>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해진 ☎ : 02-6788-4585
<b>관련부처</b>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6·297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 : 02-3145-8125·8534

238)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pp.5-6

239)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기도 함. 2019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개설목적을 소명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생활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권 제한사유는 금융기관이 임의적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중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관한 부분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이 정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 2019. 11. 26. 2019헌마1251결정)

240) 김대훈·이호기, 「“하루 이체 한도 30만원...5천만원 찾으려면 5개월 걸릴 판”」, 한국경제, 2021. 9. 5.

241) 오정인, 「같은 제도 다른 방식...한도제한계좌 해지기준 '제각각'」, SBS Biz, 2021. 12. 10.

242) 오정인, 「같은 제도 다른 방식...한도제한계좌 해지기준 '제각각'」, SBS Biz, 2021. 12. 10.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 1 현황

-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행정지도의 성격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반영된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2개의 계량지표 및 5개의 비계량 지표를 평가지표로 하여 평가항목별로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sup>243)</sup>
-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을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sup>244)</sup>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실태평가 등급 부여 및 공시가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인증”과 연계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음
  - 정부는 2020년에 모범규준의 개정을 통해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제와 자율평가에 따른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였는데,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실태평가가 반영되면서 명시되지 않은 인증제가 폐지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sup>245)</sup>

243)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 보도자료, 2021. 7. 6., p.4

244) 모범규준

제33조의2(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① 제33조에 따른 실태평가 직접 평가 대상회사는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실태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부여를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2. 대규모 민원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이와 관련 실태평가 등급 부여는 인증과 유사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태평가 결과 우수 등의 등급 부여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효과가 있음
  -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상의 인증제가 법제화된 실태평가에 반영되어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 부여가 사실상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인증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2020년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가 도입되었지만 인증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해당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가 없었다는 지적<sup>246)</sup>을 고려할 때 체계적 인증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실태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을 부여받는 것과 인증을 받는 것이 큰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에 혜택을 주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금융회사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sup>247)</sup>을 받고 있으므로 제도 중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해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2635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분석국 ☎ : 02-3145-8338·8340

245) 김건우, 「금융위가 2020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유아무야된 까닭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 1. 21.

246) 김건우, 「금융위가 2020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유아무야된 까닭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 1. 21.

247) 국회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2.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작한 후 2011년에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으로 변경하고,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음. 인증기업에게는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 1 현황

- 2021년 3월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진행되었음
  - 종전까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의 종합적 평가를 위해 행정지도의 성격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였음
  - 이번 실태평가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sup>248)</sup>를 도입하여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sup>249)</sup>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실태를 중점 평가하였다고 밝힘<sup>250)</sup>
- 2021년도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 회사는 없으며, ‘양호’ 회사는 크게 감소하고,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sup>251)</sup>
  - 전체 26개사 중 3개사가 종합등급이 ‘양호’ 등급인데, 2020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양호’ 등급 회사 수가 7개사 감소, ‘보통’ 등급은 9개사 증가, ‘미흡’ 등급은 1개사가 감소한 것임
  - ‘양호’ 등급 회사 수 감소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 감소는 2021년도 실태평가 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것과 함께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하여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금융감독원은 실태평가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밝힘<sup>252)</sup>

248) 실태평가 주기제는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2개 그룹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21년 26개사, '22년 24개사, '23년 24개사)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해 운영하는 것임.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49)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0)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1)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실태평가 주기와 상관없이 2022년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 2 향후 논의 사항

- 2021년도 실태평가 결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바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
  - 2020년도 실태평가와 비교하여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sup>253)</sup>에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sup>254)</sup> 특히 해당 사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됨
    -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에 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는 2020년도 실태평가에서는 12개사(48%)였으나 2021년도 실태평가에서는 5개사(19.2%)로 감소하였고,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에 관해서는 10개사(40%)에서 6개사(23.1%)로 감소하였음
- 또한, 정부는 실태평가의 효율성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고 자율진단을 유도한 만큼 실태평가 완화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할 것임
  - 종전까지는 매년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했는지 정부가 파악하기 곤란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한 것이므로<sup>255)</sup>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분석국  
☎ : 02-3145-8338·8340

252)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3)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①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②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③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④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⑤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⑥ 민원처리시스템 및 소비자 정보 공시 관련 사항, ⑦ 기타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음

254)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5) 손현지,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올해부터 ‘분리’ 진행」, the bell, 2021. 7. 2.

##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설명은 업계 관계자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직접 대면 방식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동의 절차의 편리성으로 인해 대면방식으로 상품 설명 또는 상품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전화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동의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발생함
    - 예컨대 대면방식의 경우 상품설명과 관련된 서류에 일일이 서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상품설명서의 다운로드와 간편한 확인 체크만으로도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전화 설명과 이에 대한 녹취의 방식으로도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위와 같이 간편하고 신속한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과거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함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기관의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영업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대응은 취약한 실정임
  - 그동안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금융거래에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
    - 앞으로 온라인·비대면 거래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에 익숙치 않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온라인·비대면 상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거래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실태조사, 현황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기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재보다 강제력 있는 고객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고도화 또는 주기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변경”하도록 관련 유권해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2635

## 조직화·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

- (보험사기 정의 및 가중처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던 보험사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 및 일반 사기보다 가중 처벌함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함(보험사기방지법 제2조제1호)
  -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sup>256</sup>: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함<sup>257</sup>
  -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함<sup>258</sup>
- (수사기관 통보의무<sup>259</sup>)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의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의무화

#### ■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보험사기 누수<sup>260</sup>: 2014년 4조 5천억 → 2018년 6조 2천억원(37%↑, 1가구당 30만원 추정)
- 보험사기 적발<sup>261</sup>: 2014년 5,120억 → 2020년 8,986억(75%↑) → 2021년 9,434억<sup>262</sup>(적

256)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7) 보험사기방지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의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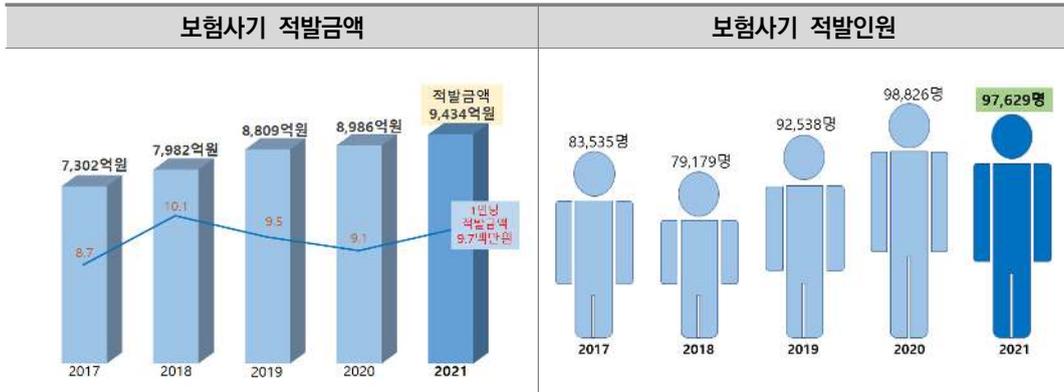
259) 보험사기방지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60) 보험연구원·서울대 연구용역 보고서, 2019. 12.

발 인원은 9만 7,629명)

|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자료: 금융감독원

- 범정형은 타 경제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신고형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020년 기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1심 판결 1,310건 중 3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함<sup>263)</sup>
- 최근의 보험사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공모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큼<sup>264)</sup>

## 2 향후 논의 사항

- 보험사기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을 범죄로 유인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보험사나 관련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연성사기 범죄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및 법정책의 개선이 필요함<sup>265)</sup>

26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2021. 5.)(<https://www.fss.or.kr/fss/bbs/B0000050/list.do?menuNo=200727&bbsId=&cl1Cd=&pageIndex=1&searchCnd=5&searchWrds=2021>)

262) 금융감독원 2022. 4. 13. 보도자료(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서울신문 2022. 5. 5.자 기사(보험사기 연 1조원, 형량·보험금 환수 강화로 완전범죄 차단)

263) 서울신문 2022. 5. 5.자 기사(“보험사기 연1조원, 형량·보험금 환수 강화로 완전 범죄 차단을”)

264)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398)

265)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말하며, 연성사기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의 내용을 부풀려서 신고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기를 말함

-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고, 특별히 양형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문제는 재판에서 피해자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정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음
  - 보험사기와 연계된 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정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보험사기 범죄자에게도 적용하여 형량을 감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보험사기의 폐해를 감안하여 선고형을 높일 수 있는 법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기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지체지급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의심정황이 있더라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회수를 못하는 경우로 이어짐
    - 보험사기 범죄자가 민원 제기 등 금융당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하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 : 02-2100-2965·2966·2968

##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형식의 후불결제를 널리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sup>266)</sup>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여신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고, 핀테크 기반의 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을 시범업체로 지정하여 금액한도, 연체율, 할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후불결제는 기본적으로 여신금융업법을 통해서도 규제 가능함
    - 현재 소액후불결제 시범사업자가 소액후불결제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선불지급수단만 만들어 놓으면 일정 금액 이내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형식(선구매 후결제, Buy Now Pay Later: BNPL)으로 운영됨
    - 후불결제가 신용공여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재 소액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금융업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영업무로 규율체계를 성급하게 확정하게 되면, 빅테크 사업의 특성(고객·판매채널·정보독점) 등에 따른 독과점 등 시장실패(가격상승·정보비대칭·혁신 감소) 발생시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부재할 우려가 있음
- 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시범사업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이 가속화 되어 시장에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경우 이들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가 문제될 수 있음
  -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나,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금융업법으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둘 경우, 규제 차이(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후불신용결제” 기능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1) 설립 허가제, (2) 카드수수료규제, (3) 강력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됨
    - 대부업, 리스·할부금융업 등의 여신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등록제이며, 감독상의 규제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 카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후불결제업무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임<sup>267)</sup>

26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113137, 2021.11.4. 발의]

267) 고은아, “해외 BNPL 시장 동향과 국내 시장 전망”, Koscom NEWSROOM 2021. 9. 23.

- 또한, 후불결제는 불법적인 방법(페이깅)으로의 이용도 우려되는바 제도권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후불결제 수단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의 후불신용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사의 후불신용결제와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카드사가 적용받는 '수수료 규제 및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게 됨
    -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신용카드사와 빅테크간의 '공정경쟁'도 불가능하며,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 관련 금융안정 저해 및 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 한편, 빅테크 업체는 후불결제 한도증액 요청과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 등 후불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후불결제의 발전·확대 가능성 및 경제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규율 방안) 여신금융업법 체계에서 일원화하여 규율하되,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후불결제업' 도입 등 일부 보완하여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진입 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금융업법 내 Small-Licence 형태(가칭 소액후불신용결제업)로 도입하여 최소 자본금 및 소액후불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영업·건전성) '후불신용결제'나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영업·운용 행위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 02-2100-2995·2998·2967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향후 과제

###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가계부채가 GDP 대비 2022년 1분기 기준 104.3%<sup>268)</sup>에 이르는 등 향후 경기침체 시에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음
  - 최근의 가계부채는 50~60대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20대 신용대출에 의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30대 영끌족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으며, 그 심각성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주식가격의 폭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하고 있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가계의 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금리,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고환율 등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현실화 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가계의 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바, 배드뱅크 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은행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 및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적기관과 민간이 주축이 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채무자의 도덕·윤리적 문제, 은행 등 금융기관 간의 이해관계, 작은정부 지향 등이 맞물리면서 최종 채택되지 않았음
  - 그런데 2022년 9월말로 연기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들의 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수준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다시 한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이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

268) 국제금융협회(IIF) 세계부채보고서(2022. 6. 6.자) 참조.

- 정부의 2022년 5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규모가 37.5조원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 한계상황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도하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캠코와 같은 공적기구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자영업자는 2021년 현재 23.9%로 OECD 평균인 17%보다 높은 비율인 바,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경우와 폐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배드뱅크 운영이 필요함
  - 은행 등 금융기관도 부동산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여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자영업자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폐업 시 부담하게 될 막대한 상환금액으로 인해 부실을 키우는 상황인 바, 파산 등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배드뱅크 운영 운영이 필요함
  -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정책 추진) 민간 금융기관 위주의 민간 금융기관 위주의 배드뱅크는 채무 상환 등 수익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채무 재조정, 회생 여부 판단, 재기 방법 제시 등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 02-2100-2617

##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범죄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비대면 사업방식으로 야기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범죄 이용 문제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업무 특성상 근본적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함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특화된 사업영역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가 집중되므로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온라인 비대면거래 중심의 영업방식은 거래과정에서 부실심사, 고객불만 처리나 고객서비스 대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진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수 급증<sup>269)</sup>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은행계좌 현황<sup>270)</sup> |

(단위: 건)

구 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시중은행
2017년	199	157	2만 3,169
2020년	2,705	423	2만 426
2021년 상반기	2,025	477	-

- 위 표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건 수가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 건수 급증 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케이뱅크)과 7월(카카오뱅크)에 각각 영업을 개시하여 2017년에는 지급정지된 은행계좌 건수가 적었으나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급증하였는바, 그 원인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신규은행으로 2018~2021년의 기간에 신규계좌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비대면거래상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절차의 간소화로

269) 굿모닝경제 2021. 10. 1.자 기사(배진교 의원 “카카오·케이뱅크 이용 계좌 급증”)

270) 굿모닝경제 2021. 10. 1.자 기사(배진교 의원 “카카오·케이뱅크 이용 계좌 급증”)를 참조하여 표를 작성함

인해 빠른 속도로 계좌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였는지의 여부 판단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실태조사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래 표에 의할 경우에 2018~2020년 기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수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많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현황(2017~2020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17년대비수준 비율(%)
<b>총</b>	<b>22,784</b>	<b>30,687</b>	<b>43,771</b>	<b>20,191</b>	<b>88.6</b>
시중은행 소계	22,428	29,537	41,296	17,063	76.0
국민은행	8,562	11,819	14,099	5,364	62.6
신한은행	5,580	7,066	11,593	3,860	69.1
우리은행	4,479	4,979	9,284	4,187	93.5
하나은행	2,821	4,278	4,835	3,138	111.2
SC은행	986	1,395	1,485	514	52.1
인터넷전문은행 소계	356	1,150	2,475	3,128	878.6
케이뱅크	157	218	322	423	269.4
카카오뱅크	199	932	2,153	2,705	1359.3

자료: 금융감독원

-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영업행태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었으며 특히,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간편 계좌개설 등의 방식을 널리 수용하였기에 특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실명확인 방법의 개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실명확인 방법은 금융기관이 선택적으로 2가지 방법을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sup>271)</sup> 금융기관이 기술적 문제없이 이를 성실히 준수한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71) 금융위원회 2015. 12. 2.자 보도자료(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 (이중확인: 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온라인·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강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변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면방식 등 실명확인 보완 방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는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대면 또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중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방식의 실명확인 보완책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6·2978

##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 25. 시행되어 모든 금융상품 거래시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음
  -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6대 판매원칙 적용, 판매금지 명령,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정이탈금지 제도, 소송중지 제도,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 요구권 강화 등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됨
    - 청약철회권, 상품정보 설명 의무화, 위법계약해지권 부여, 시장규율 확립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한 펀드상품 가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보다도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보호에는 취약한 상황이며, 이러한 보호의 한계는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보다 심각한 상황임
  - 가독성 등 고객 편의성 측면 뿐만 아니라 고객이 혼자 모든 가입단계를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보다 고객 중심적 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이 금융회사와 거래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후 상품설명 의무 등이 강화되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상황이며, 2022년 1분기 예정이었던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지연되었음
- 최근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금융취약계층이 대면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금융거래상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sup>272)</sup>되어 논의 중인바,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실제 대면 거래 과정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법에 의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는바, 온라인·비대면 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대면방식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2635

272) 2022년 4월 25일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5381)」과 2022년 5월 9일 이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5528)」에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 등도 금융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개정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 1 현황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벤처투자 중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초과하고<sup>273)</sup>, 그 중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RCPS)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벤처투자 수단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활용되는 이유는 다른 투자수단인 보통주, 전환사채와 비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가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들에 투자시, 투자자입장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선호하며, 투자받는 기업의 경우는 보통주를 선호하지만, 만약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직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확정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환사채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함

【 보통주,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비교 】

구 분	의결권	배당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회계처리
보통주	○	X	-	자기자본
전환사채	X	원금, 확정이자 지급	○	부채
상환전환우선주	○*	1) 상환권 행사(O): 원금, 상환이자 지급 2) 상환권 행사(X): 이익범위 내에서 배당	○	1) K-GAAP: 자기자본 2) K-IFRS: 부채 혹은 자기자본
전환우선주	○*	-	○	전환가격조정 유무에 따라 부채 혹은 자기자본

\* 반드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다수의 경우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가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음<sup>274)</sup>
- 다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가진 주식으로, 투자자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에<sup>275)</sup> 이를 자본으로 분류할 것인지, 부채로 분류할 것인지의 이슈가 있음

27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통계정보,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년 1분기에는 69.6%로 가장 높은 비중임.

274) 최영근,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환전환우선주 개선 정책 제언」, 『중소기업정책연구』, 겨울호, 2019.

- 국내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일괄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반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우선주에 부착된 전환가격조정(Re-fixing) 조항의 유무, 상환청구권을 투자자(주주)가 보유하는지 발행회사가 보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짐<sup>276)</sup>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전환가격조정 조항이 없는 전환우선주와 전환가격 조정조항이 없으면서 상환청구권을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상환전환우선주뿐임
-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전환권에 대해서는 전환가격조정조항이 붙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상장시 이들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 (주)아한 형제들, (주)야놀자, (주)위메프 등 다수의 유니콘 기업들도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받았으며<sup>277)</sup>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2019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 금융감독원이 토스의 자본금 중 일부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sup>278)</sup> 이후 비바리퍼블리카는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고 전환우선주로 변경함<sup>279)</sup>

- 그 외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자본으로 분류한 사례들이 등장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표적으로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코리아센터는 상환전환우선주 260억원 가량을 투자받았는데, 이를 자본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과거 한국상장회사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신주인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sup>280)</sup>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275) 발행회사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임.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는 Call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라고 지칭함.

276) K-IFRS 제1032조에 따라 금융상품을 발행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구성요소를 지분 또는 부채를 분류한다. 김영준·이유진·이수정, 「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2020); 조성훈,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이슈보고서』 20-20, 자본시장연구원(2020), 4면; 김범준·안혜진·최종학·곽수근, 「STX에너지의 경영권 분쟁과 전환상환우선주의 역할」, 『회계저널』 제27권 제1호(2018), 207면.

277) 조성훈,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이슈보고서』 20-20, 자본시장연구원(2020), 7면.

278) 아주경제, “토스, 자본금 96억원 상환우선주... K-IFRS 적용하면 ‘자본잠식’, 2019.9.20.; 조선비즈, “토스가 뭐길래, 금융위는 뜨겁고 금감원은 차갑고”, 2019.9.19.

279) 한겨레, “토스, 상환전환우선주 문제 해결... 인터넷은행 인가 청신호”, 2019.11.14.; 금융위원회,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인가」, 보도자료, 2021.6.9.

280)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이나,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언론기사 및 타 문헌에서 참조함. 김영준·이유진·이수정, 「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2020), 319면; 손혁·정재경, 「회제이-00094는 전가의 보도인가?: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1호, 한국세무회계학회(2022); 파이낸셜뉴스, “자본? 부채?... 메자닌 회계처리 두고 업계 혼란”, 2020.2.16.; 데일, “RCPS ‘자본 vs 부채’ 금융위도 ‘오락가락’”, 2022.3.24.

-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오도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환전환우선주를 자기자본 처리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자본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K-GAAP	K-IFRS	
전환우선주	전환가격조정 유	자기자본	부채	
	전환가격조정 무		자기자본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권 투자자 보유	상환청구권 발행회사 보유
	전환가격조정 유		부채	
	전환가격조정 무		부채	자기자본

자료: 김범준 외(2018)<sup>281)</sup>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의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복합금융상품의 자본·부채 분류 기준이 회계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가 언제나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판단하여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일부 기업의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 : 044-215-2538·2758·2685

281) 김범준·안혜진·최종학·곽수근, 「STX에너지의 경영권 분쟁과 전환상환우선주의 역할」, 『회계저널』 제27권 제1호(2018), 209면; 조성훈,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이슈보고서』 20-20, 자본시장연구원 (2020), 14면에서 재인용.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1 현황

-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 횡령 등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는 기초적인 내부통제마저 미작동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내부통제 시스템강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제1항제5호는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임원·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는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와 비교해보면 내부통제의 정의는 미국,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통제를 법규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준수 정도로 이해하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이해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물질·인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sup>283)</sup>
  -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마련 의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부담이 크고 추상적인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8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3) 이호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제재는 기관제재와 인적제재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관제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영국과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 구축의무 위반시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sup>284)</sup>
- 인적제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임원이 내부통제 소홀 마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인적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주요국과 규제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은행권의 CEO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증권사 CEO 대부분에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해당 조항이 일종의 선언·권고 수준이며,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금융당국의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음<sup>285)</sup>

## 2 향후 논의 사항

-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위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sup>286)</sup>
-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sup>287)</sup>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3

284) 이호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285) 시장경제, [금융 CEO징계 타당한가①] “내부통제 기준 모호, 자의적 처벌 남발”, 2021.5.25.

28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제2018-41호, 2018.10.19., 41-46면;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과 인식 미비에 대한 지적으로 안수현,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체제 확립방안 모색」,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1호, 법무부, 2015, 81면; 임정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BFL』 제 7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97면.

287) 이호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 1 현황

- 보수환수(Clawback)는 계약에서 정한 특정 상황 발생시 혹은 위법행위가 있을시 기지급된 금전적·비금전적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또는 제도임<sup>288)</sup>
-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적 보수규제에 발맞추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을 수용하여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하여 일정기간 성과보수의 이연지급과 성과에 연동한 보수의 조정, 감액, 환수를 규율하였음
  - 하지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규제 성격을 띠기에,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
    -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제3항은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하나,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규정함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2호는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성과 악화 시 당초 약속했던 성과급보다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설계되도록 하고 있음
    - 동규정 제9조제5항제2호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9조제5항제3호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회사가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sup>289)</sup>
    - 다만 위 조문은 환수를 의무화한다기 보다, 이를 마련한 경우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는 의무임
    - 환수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을 주식연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함<sup>290)</sup>

288) 정우영, 「이사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규제의 검토 - 과다 지급된 보수를 중심으로-」, 『상사법 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63면.

289) 금융위원회, 「한겨레 10.10일자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6.10.10.

| 국내 금융회사 보수환수제도 변천<sup>291)</sup> |

	2010년	2014년	2016년
제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감독규정
내용	보수환수, 축소가능 <sup>292)</sup>	축소가능 <sup>293)</sup>	이연가능*
대상	경영진과 특정직원	경영진과 특정직원	임원과 특정 직원

\* 이연만 가능한지 환수와 축소도 포함하는지 다름이 있음

##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연만 가능할 뿐 환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보수환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현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은 그 의미상 성과보수 환수와 축소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규상 의무가 부과되어 구속력이 강화되었다는 입장<sup>294)</sup>으로 견해의 다름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보수환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경제적 이유<sup>295)</sup>로 1) 환수제도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경영성과가 나쁜 임직원에게 사후적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2)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보수결정과 지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성과와 보수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데, 환수규정이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3) 환수제도는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이유로 임원을 제재하여 기업이익의 정보가치를 개선하고 보수약정을 더 잘 설계하도록 이바지하며, 4) 환수조항은 기업의 불상사와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경영

290) 금융위원회, 「한겨레 10.10일자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6.10.10.

291) 한겨레, “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2016.10.10.를 바탕으로 작성함

292) 2010년 1월 금융감독당국과 업계 공동 T/F를 통해 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예: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등)을 제정함. 이수정,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3.

29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2014.12.(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됨) 제45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③ 금융회사는 회사 부서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과거 변동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급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6조(이연지급) 금융회사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수년간 이연지급되어야 하며 변동보상의 비율은 직원 근무연수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특정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연지급되는 변동보상의 비율은 상당수준 이상(예: 60%이상) 이어야 한다.(...) 중략

294) 금융위원회, 「한겨레 10.10일자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6.10.10.

295) 임정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4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28-229면; Fried, Jesse & Nitzan Shilon, “Excess-Pay Clawbacks”,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36(4)(2011).

자들이 위험을 인수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만약 보수환수제도를 도입<sup>296)</sup>하면, 환수적용대상, 환수적용요건, 환수적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함<sup>297)</sup>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3

296)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로는 김희철, 「이사의 과다보수 환수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5; 보수규제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특칙으로 하자는 견해는 인정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4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환수대상 보수와 환수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최문희, 「금융회사 보수규제의 논점과 개선과제-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석을 중심으로」, 『BFL』 제7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297) 정우영, 「이사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규제의 검토 - 과다 지급된 보수를 중심으로-」, 『상사법 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73-77면.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필요

### 1 현황

-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제도의 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금융회사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금자 개인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마련된 제도임<sup>298)</sup>
  -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하여 금융제도, 금융산업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우리나라는 예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적으로 정의하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②에서 비보호대상 예금은 열거함
  - 보호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한도<sup>299)</sup>로 하고 있음
  - 이는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현행 상황에 맞게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sup>300)</sup>이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들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하며 보호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보호한도 비율(1.3배)은 미국(3.7배), 영국(2.5배), 일본(2.2배)에 비해 낮은 수준임

298) 김은정,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210면.

29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300) 한겨레, “예금자보호 20년째 5천만원...예보시장 보호대상 높여야 되지 않나”, 2022.6.22.

**| 예금보호한도 변경 연혁 |**

구분	2010년					비고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97.11.19 이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업권별 보호기구가 각각 보호
'97.11.19 ~'98.7.31	전액보호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해소
'98.8.1~ '00.12.31	'98.8.01이후 가입: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보호					금융시장 불안 진정 및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해소
'01.1.1~ '15.2.25	5천만원					금융시장 안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분보호제 시행
'15.2.26- 현재	5천만원, 퇴직연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노후자금 마련 지원 등을 위해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보호한도 적용

\*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국의 예금보호한도 비교<sup>301)</sup> |**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
보호한도	8만 5천파운드, 일시적 고액예금은 1백만 파운드 별도 한도	8개 소유권 범주별로 25만 달러	7개 소유권 범주별로 10만 캐나다 달러	1천만엔, 결제용 예금, 결제용 채무는 전액보호	5천만원, 퇴직연금 별도 한도

**2 향후 논의 사항**

■ 2022년 2월 23일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각계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예금보험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어야 함<sup>302)</sup>

- 예금보호 한도 증액 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개별 예금자보호가 강화되는 편익이 있으나, 예금보험료 인상이 대출이나 예금 금리 등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되어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변경을 검토해야

301) 예금보험공사,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와 예금보험제도」, 2017.12, 163면.

302) 금융위·예금보험공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2.2.23.

- 한다는 전문가 견해<sup>303)</sup>에 따라 증액 여부 및 증액할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걸쳐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 02-2100-2915

303) 금융위·예금보험공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2.2.23, 3면(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발언).

##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 1 현황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경영자는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고정보수만을 받는 경영자에 비해 주가를 상승시킬 인센티브가 있음<sup>304)</sup>
  - 「상법」 제340조의2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상법<sup>305)</sup>과 기업의 정관에서 주주총회결의일 이후 2년에서 일반적으로 4~5년 사이로 정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들은 회사를 상장시킨 후 한달 여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 약 878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바 있음<sup>306)</sup>
  - 경영진의 대규모 매도 사후 공시 이후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강하여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졌고 의무보유확약 등에 걸려있는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일부 경영진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함
  - 카카오페이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
    - 당시에는 의무보유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전에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에 적용되는 것(6개월)과 달리, 상장 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행위는 위법은 아니었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수렴됨<sup>307)</sup>
  - 2022년 2월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즉,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이후 행사한 경우)에 대하여도 의무보유대상에 포함하도록 함<sup>308)</sup>

30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6판, 박영사, 2022, 474면.

305)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06) 홍지연, 「성과보상 체계로서의 스톡옵션의 문제점 및 과제」, 『자본시장 포커스』 2022-05호, 자본시장연구원, 1면.

307) 이후 카카오페이는 2022년 1월 전 계열사에 대해 1년의 임원의 주식보호예수기간을 정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우는 2년의 매도제한기간을 둠

## 2 향후 논의 사항

-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에도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나, 의무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직후 매도물량이 집중되면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물량 집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보유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 차등화(Staggered system)를 설정하여야 함<sup>309)</sup>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발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22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회사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sup>310)</sup>
  -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 매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됨<sup>311)</sup>
  - 다만, 업계에서는 사전공시를 하게 되면 시장에 주가가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 등<sup>312)</sup> 사전공시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 : 02-2100-2644·2685

308) 금융위원회, 「신규상장기업 임원의 부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22.2.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2022.3.18.;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2022.3.17.

309) 금융위원회, 「신규상장기업 임원의 부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22.2.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2022.3.18.

310)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보도자료, 2022.6.17. {내부자 증권거래가 시장가격 형성 기능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공시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 교수 의견)}.

311)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15235(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312) 비즈뉴스와치, “‘소액주주보호’ 드라이브 건 금융당국...의견 좁히기는 ‘과제’”, 2022.6.21.